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관련 지침

(가족지원과)

□ 배경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·시행('15.6.8.)으로 한부모가족이 5·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
-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5년·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·특별공급대상 추천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(주택의 특별공급)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(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,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(제3호·제4호·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.

12의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(임대주택 공급만 해당한다)

□ 특별공급 대상

- **입주대상:**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·비속인 세대원)
- **분양대상:**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
- 한국토지주택공사: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
- 민간 주택사업자 등: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

□ 특별공급 절차

가. 물량파악

- 한국토지주택공사,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

나. 확보

-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
- 시·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·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
-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
- 시·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·확정

다. 신청접수

- 읍·면·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
- 접수일자,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정함
- 구비서류(시군 자체 보관)
-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한부모가족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 등
- 접수 산정시 유의사항
- **민원 소지 없도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따른 우선순위부 작성**

라. 통보

- 시·도지사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
- 선정 기준은 [별첨3]을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
- 선정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, 주택공급업체 등에 통보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임대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

[별첨2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안)

본 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0000(지자체명)이 동의인(본인)에게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'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22조 및 '개인정보보호법' 제15조, 제17조 2항,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.

이에 본인은 000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고지 내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정보 수집·이용자 : 여성가족부, 0000(지자체명),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,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(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업무의 위임·위탁기관을 포함),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입주자격 심사 및 계약 안내 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[기본항목]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정보(이름, 가족사항)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,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(민감정보(건강정보)), 주민등록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(의료)보험증,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, 주택소유정보,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, 장애인증명, 차상위(자활, 장애인, 한부모, 본인부담경감대상, 우선돌봄) 증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[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] 6개월, [입주예정자]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(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) 	
동의 사항	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	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	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(건강정보)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	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	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 (세대원의 정보 열람·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 부담함)	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서약자(동의자) 성 명 : _____ (서명 또는 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		년 월 일
시 · 도지사 귀하		

[별첨3]

□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

평점요소	배점기준			비고
	총배점	기준	점수	
세대원원 수	30	5인 이상	30	○ 동거인 미포함 * 단,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동거인으로 표시된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 ○ 신청자 포함
		4인	26	
		3인	22	
		2인	18	
		1인(단독세대)	5	
무주택 기간	20	10년 경과자	20	○ 한부모 등록 시부터 무주택 기간 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*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
		8년 경과자	15	
		6년 경과자	10	
		4년 경과자	5	
		2년 경과자	2	
특별공급 대상 지역 거주 기간	20	5년 이상	20	○ 실제 거주기간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6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8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
		1년 미만	1	
근로 기간 등 자활의지	20	24개월 이상	20	○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근로 합산 기간 (신청자 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) * 근로기간은 국토부 훈령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별표6에 따름 (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,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)
		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	16	
		12개월 미만	12	
		해당사항 없음	0	
아동 장애 여부	10	1 ~ 2급 장애	10	○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
		3 ~ 4급 장애	8	
		5 ~ 6급 장애	6	
		해당사항 없음	0	

-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“배점 기준표”를 작성, 사용할 수 있음
- 동점자 처리기준: 총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우선으로 하며,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기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

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

□ 공문서 표기방법

○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뢰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

검색대상	검색의뢰 인원				검색 목적	관련 근거
	계	본인	배우자	가족		
○○아파트 특별분양 신청자	90	30	-	60	입주자 선정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

□ 자료작성 방법

○ TXT 파일로만 작성(엑셀, 한글,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)

○ 작성방법

-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
-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
- 일련번호 : 6자리
 - 배우자가 없는 자 : 000000
 - 배우자 외 세대원 : 333333
- 구분자 : 한부모 지원자는 "+"로 세대원은 "-"로 구분하여 입력
- 주민등록번호 : "-"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
- 이름 :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
- 입력번호, 구분자, 주민등록번호, 이름 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은 엔터키로 구분
 - ※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

○ 작성 예

- ○○아파트 청약신청자 (배우자가 없는 경우)

·000000+1234567891234홍길동

·333333-4567860531348최진희

※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

※ 박스(표, 선그리기, 표 감추기 등)로 처리하지 말 것

□ 유의사항

-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
-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

[별첨 4 : 서식]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

순위	성명	생년 월일	세대원 수	무주택 기간	특별공급 대상지역 거주기간	근로 기간 등 자활의지	아동 장애 여부	종합 점수	연락처 (전화번호)	비고

※ 작성기준

- 무주택기간 :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(연속된 기간)

-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6조에 의함.